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5
----------	------

2017. 11. 2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7. 11. 13 유찬중·이숙자 의원 공동발의 (2017. 11. 14 회부)

2. 제안이유

- 좋은빛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광활성화 및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표출시간을 완화하고자 함.
- 또한,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서울시 빛공해 사진 공모전 운영시 시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골자

- 가. 좋은빛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방식 변경 (안 제12조, 제15조)

- 부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나. 미디어파사드 영상표출시간 완화 (안 제24조)

- 예술, 문화콘텐츠 소비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당 20분에서 40분으로 완화

다. 좋은빛상 및 빛공해 사진 공모전 선정 및 시상 등 (안 제27조)

- 빛공해 사진 공모전 수상자에게도 시상 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제출배경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장식조명’의 영상표출시간을 완화하며, ‘서울특별시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찬종·이숙자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7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개정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서울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 제7조¹⁾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10조~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총 3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음 (붙임-1 참조).
- 안 제12조 및 제15조는 위원장(도시계획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 위촉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하던 것을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필요시 매 회의 때마다 부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장 부재 시에도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위원장 부재시 매번 다른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바, 자칫 위원회 운영상 일관성과 균형감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으로 안 제24조제3항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표출시간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를 시간당 20분에서 40분으로 증가(5분 연출 10분 소등 → 10분 연출 5분 소등)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예술 및 문화콘텐츠의 소비 활성화와 연계한 관광산업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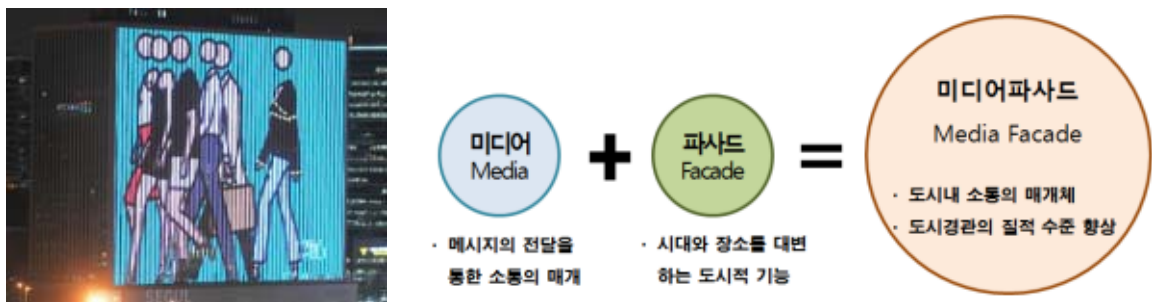
1)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안 제24조제3항).

- 서울시 내부집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강남구 압구정로 343)에 최초의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 설치된 이래, '17년 10월 현재 서울시에는 총 42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됨.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명방식으로 LED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음.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14.7월 조례 제13조2)(현행 제22조)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신설·개량·증설하는 경우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였으며, '14.12월에는 미디어파사드 관리 계획과 함께 설치 기본원칙, 지역별 허용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15.4월에는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조명계획 수립기

2)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준을 신설하는 등 미디어파사드 관리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왔음.

- 그럼에도 미디어파사드는 전광판(광고조명)에 비해 설치규모(m²)에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조명시설이므로, 연출시간 완화에 따른 빛공해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붙임-2 참조).
 - 조례 제24조제3항 단서조항³⁾에 따라 몇몇 시설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출시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⁴⁾, 그에 따른 빛공해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연출시간 완화에 따른 빛공해 요소보다 예술·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관광수요 창출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점등시간 조정은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안 제27조는 빛공해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서도 상금·상패·메달 등을 시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 서울시는 현재 조명박물관과 공동으로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는데(붙임-3 참조), 시민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임에 따라 상금·상패·메달 등을 수여하여 공모전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서울시내 빛공해 피해 건수는 증가추세⁵⁾에 있으며, 이는 빛공해 정책의 대시민 인지도가 부족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3)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와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4) 현행 조례 제24조 단서조항에 따라 완화받은 사례로는 세종문화회관(시간당 50분), 서울스퀘어(40분), 롯데월드타워 행사용 콘텐츠(시간당 50분) 등이 있음.

5) ‘13년(778건), ‘14년(1,571건), ‘15년(1,216건), ‘16년(2,043건)

□ 결 론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연출시간을 확대하며, 기타 빛공해 방지에 대한 시민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검토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미디어파사드의 경우 점등시간을 현행 2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할 경우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조례 제21조6)에 따른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재정비)시 운용실태 분석에 기초한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음.
 - 특히 야간의 과도한 빛노출은 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빛공해 국가라는 평가⁷⁾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점등시간 연장보다는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6) 시장은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 2016.6월호


【붙임-1】 서울특별시 좋은빛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출처: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 소관부서 : 도시빛정책과
- 설치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제18조
- 기 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자문) 등(조례 제22조)
- 위원회 정수 : 25인 이상 50인 이내
- 위촉 위원수 : 35명('17.10.15. 현재)
- 위 원 장 : 도시계획국장
- 위원현황
 - 시공무원 : 2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 시 의 원 : 3명
 - 외부위원 : 30명
- 위원회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회의의 소집시기 : 매월 화요일
- 위원회 운영공개(회의록) 여부
 - 심의 종결된 안건은 심의 후 15일 이내

【붙임-2】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과 전광판(광고조명) 비교

(출처: 도시빛정책과 제공자료)

구 분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광고조명(전광판)
설 치 사 진		
설 치 장 소	상업, 공업(조명환경관리구역 제4종) 지역의 25m 대로와 면하는 건축물	상업, 공업지역의 4층 이상 15층 이하 건축물
규 모	제한 없음	최대 225㎡ (가로 × 건축물 높이 1/2)
운 영 시 간	일몰 30분 후 ~ 23시 소등 (시간당 20분 이내 상영)	아침 ~ 24시 소등
빛방사허용기준 발광표면휘도(평균값)	25cd/m ² 이하	1,500cd/m ² 이하
상영 콘텐츠	예술작품에 한정, 광고 불가	광고 등
심 의 기 관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좋은빛위원회 심의)	자치구 광고물 담당부서 (허가)
설 치 요 건	자 율	허 가
관 련 법 령	설치할 경우, 「인공조명의 의한 빛공해 방지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의 의한 빛공해 방지법」
설 치 수 량 (2017년 6월 현재)	약 42 개	약 100 개

【붙임-3】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현황 및 연도별 추진실적

(출처: 도시빛정책과 내부자료)

□ 공모전 개요

- 주 체 : 서울시, 조명박물관 공동 개최
- 분 야 : 사진, UCC 작품(어린이·청소년부 / 일반부)
- 주 제 : 공해의 빛, 생명의 빛
- 시상내역 총 70점
 - 서울시장상 35명 (사진 30점, UCC 5점) - 어린이·청소년부
 - 조명박물관장상 35명 (사진 30점, UCC 5점) - 일반부
- 세부 시상내역

훈 격	부 문		수상등급	인원(팀)	시 상 내 역
서울시장상	어린이 · 청소년부	통 합	대 상	2	상장 및 부상
		사 진	최우수	1	상장 및 부상
			우 수	2	상장 및 부상
			장 려	25	상장 및 부상
	UCC	최우수	1	상장 및 부상	
		우 수	2	상장 및 부상	
		장 려	2	상장 및 부상	
조명 박물관장상	일반부	통 합	대 상	1	상장 및 상금(3백만원)
		사 진	최우수	1	상장 및 상금(2백만원)
			우 수	2	상장 및 상금(1백만원)
			장 려	2	상장 및 상금(5십만원)
	입 선		24	상장 및 부상	
	UCC	최우수	1	상장 및 상금(2백만원)	
		우 수	2	상장 및 상금(1백만원)	
		장 려	2	상장 및 상금(5십만원)	

□ 빛공해 사진·UCC공모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어린이 / 청소년부		일반부	
	· 사진 작품	UCC 작품	사진 작품	UCC 작품
2017년(제13회)	259	28	2,682	47
2016년(제12회)	240	14	2,582	34
2015년(제11회)	324	32	3,226	109
2014년(제10회)	546	44	3,562	79